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28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칙 제45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채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임원후보자 심사기준) [별표1]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을 대표이사과 선임직 이사·감사로 구분하고 선임직 이사·감사의 세부심사기준을 신설 한다.

제11조(심사절차 및 방법) 면접심사 진행 유무에 따라 서류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정 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의 담당부서와 역할의 내용을 개정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류심사 평가표를 대표이사과 서류심사 평가표로 개정 하고 응시 분야 란을 삭제 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 선임직 이사·감사 서류심사 평가표를 신설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면접심사 평가표를 대표이사 면접심사 평가표로 개정 하고 응시 분야 란을 삭제 한다.

[별지 제2호의2 서식] 선임직 이사·감사 면접심사 평가표를 신설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지원서의 '평점/만점' 란을 삭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임원추천후보자 인적사항의 '출생'을 '지역'으로 개정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임원추천위원회 의사록을 신설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내규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은 후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